

서울연구원 예산집행지침 변경(안)

2018. 7. 16. 예산팀

- 근로기준법 변경·시행에 따른 특근매식비 집행기준 변경 필요
- 정규직 연구원 운용에 따른 자체과제 과제운영비 편성 및 사용 기준 정리

□ 총괄 비교표

현 행		변 경 (안)
○ 특근매식비 - 근무시간 개시 전 또는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매식비 - 지급대상 : 전 직원 - <u>집행기준 : 8,000원/1식(최대 월 25회)</u>		○ 특근매식비 - 근무시간 개시 전 또는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매식비 - 지급대상 : 전 직원 - <u>집행기준 : 8,000원/1식(주 12시간 이내)</u>
○ 일반운영비		○ 일반운영비 - <u>과제당 200,000원/월 이내</u>
<u>기준금액*</u>	<u>편 성 기 준</u>	
<u>50,000,000원 미만</u>	<u>기준금액의 5% 이내</u>	
<u>50,000,000원 초과 100,000,000원 이하</u>	<u>2,500,000원 + (50,000,000원 초과액의 3.5%) 이내</u>	
<u>1억원 이상</u>	<u>4,250,000원 + (100,000,000원 초과액의 2%) 이내</u>	
<u>※ 기준금액 :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금액</u> <u>※※ 기간제연구원을 활용할 경우, 기간제연구원 인건비를 포함한 총액금액에서 위탁연구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</u>		

□ 변경사유

○ 특근매식비

-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른 주 52시간 이내 연장(휴일)근로 허용 및 매식비 적용
- 연장(휴일)근로 신청 결재 후 주 12시간 이내 매식비 지급

○ 일반운영비(자체연구과제)

- 정규직 연구원 운용에 따른 편성기준 정비

□ 시행일자 : 2018년 7월 1일부터